

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지급기준

심의구분 : 개정

제안부서 :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

제안사유

-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해외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개정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요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전문가활용비)</p> <p>② 해외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강사료(회)</th> <th colspan="2">자문료</th> </tr> <tr> <th>단기(일)</th> <th>장기(월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</td> <td>\$1,500 이내</td> <td>\$700 이내</td> <td>\$20,000 이내</td> </tr> <tr> <td>교수급 이하</td> <td>\$1,000 이내</td> <td>\$400 이내</td> <td>\$11,000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③ ~ ⑤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항 신설></p>	구분	강사료(회)	자문료		단기(일)	장기(월)	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	\$1,500 이내	\$700 이내	\$20,000 이내	교수급 이하	\$1,000 이내	\$400 이내	\$11,000 이내	<p>제3조(전문가활용비)</p> <p>② 해외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강사료(회)</th> <th colspan="2">자문료</th> </tr> <tr> <th>단기(일)</th> <th>장기(월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</td> <td>\$1,500 이내</td> <td>\$700 이내</td> <td>\$20,000 이내</td> </tr> <tr> <td>교수급 이하</td> <td>\$1,000 이내</td> <td>\$400 이내</td> <td>\$11,000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해외전문가의 구분은 전문가의 소속을 기준으로 적용함.</p> <p>③ ~ ⑤ <현행과 동일></p> <p>⑥ 해외전문가 활용비를 기관에 지급하는 경우, 해당 기관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 기준은 상기 2항과 동일하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부칙(2023.5.11.)</p> <p>이 규정은 2023.5.11.부터 시행한다.</p>	구분	강사료(회)	자문료		단기(일)	장기(월)	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	\$1,500 이내	\$700 이내	\$20,000 이내	교수급 이하	\$1,000 이내	\$400 이내	\$11,000 이내	<p>▶ 해외전문가의 구분 추가</p> <p>▶ 기관 지급 규정 추가</p>
구분			강사료(회)	자문료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단기(일)	장기(월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	\$1,500 이내	\$700 이내	\$20,000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수급 이하	\$1,000 이내	\$400 이내	\$11,000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강사료(회)	자문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단기(일)	장기(월)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	\$1,500 이내	\$700 이내	\$20,000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수급 이하	\$1,000 이내	\$400 이내	\$11,000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